

부설기관운영위원회 규정

제 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신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부설기관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기능·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조직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.

③ 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 3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결원으로 인한 후임의 임기는 결원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제 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.

1. 부설기관 설립 및 폐지에 관한 사항
2. 부설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
3. 기타 부설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

제 5조(회의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6조(위원회의 사무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